

전주지방법원 2015. 5. 29 선고 2014가단2465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5. 8.

판결 선고 2015. 5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전 52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단층 시멘트조적조 건물 129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14. 4. 9. 전북 완주군 C 전 526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2013. 11. 27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1982. 12. 22. 주문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하는 바,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외에 이 사건 토지도 함께 소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안영화

별지